

신설된 조문·별표	사유
제20조(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 등)제3항 시공자는 시공한 시설에 시공표지판을 부착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표지판 설치기준을 준용
제34조(특정공급계약 승인·신청)	법 제23조의 특정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제38조(안전관리규정승인신청서 등)	법 제26조제1항의 안전관리의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제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제39조(안전관리규정변경승인신청서)	상동
제42조(자체검사)	법 제27조의2, 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의 자체검사실시 및 안전장비보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제43조(자체검사의 대행)	상동
제44조(안전장비)	상동
제45조(안전성평가대상시설)	상동
제46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상동
제47조(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	상동
제48조(위해방지조치)	상동
제51조(자체안전교육의 내용 등)	법 제30조의2의 자체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제59조(부식방지협의)	법 제30조의7의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협의의무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1] 개정배경

도시가스사업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23호),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관련고시기준을 정비하고, 현장적용 및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조문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2] 주요 개정내용 해설

1) 통풍구조 및 강제통풍시설(제2장 제2절 제8관)

「강제통풍시설」이란 명칭을 건축법 등에서는 「기계환기설비」로 명명하고 있는 등 용어의 통일을 위해 그 명칭을 변경하고,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 방출관의 높이를 현행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할 수 있게 함.

2) 배관재료기준(제3장 제1절 제2관)

1999년 7월 1일 이후 가스관으로는 현행 KS D 3507(배관용탄소강관) 대신에 연료가스용배관(KS D 3631)를 사용토록 고시를 개정(1998년 11월 26일)하였으나, 그간 경기침체 및 KS 공장 심사 지연등의 사유로 상당물량(약 2만본)의 KS D 3507 배관이 재고로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 이들 배관의 소진과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기 피복 생산된 배관은 1999년 6월 30일까지는 개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설치가 가능도록 조정하기 위함

3) 도시가스배관설치 및 보호조치기준(제3장 제2절 제1관)

교량의 변동 및 진동 등으로부터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량 설치배관에는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열응력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 흡수조치를 하고, 고정 및 지지는 배관 처짐량의 500배 미만이 되는 지점마다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며, 매설심도 미확보시 설치하는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은 「하천·수로 횡단시 설치하는 방호구조물」의 기준을 준용토록 명확히 함.

4)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기준(제3장제4절제4관)

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심사기준 미비로 인한 굴착공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스 안전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심사방법 및 절차를 새로이 신설, 규정하여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함

5) 정압기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및 분출면적 등에 관한 기준(제4장 제2절)

정압기 안전장치의 설정압력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도시가스회사의 건의와 시행규칙 개정(1998년 12월 10일)에 따라 안전장치의 작동순서를 「이상압력통보 → 긴급차단장치 작동(주정압기) → 안전밸브 → 긴급차단장치 작동(예비정압기)」 순으로 조정하고 설정압력도 완화 조정함.

6) 정압기실의 방호벽 설치기준(제4장 제7절)

가스도매사업자 정압기의 방호벽은 고법 및 액법 고시기준에 의한 방호벽 설치기준을 준용 설치토록 하되 방호벽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콘크리트블럭제로 한정함.

7)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기준(제7장 제1절)

안전관리규정은 사업자 스스로가 작성 운영하는 것임을 명확히하고 중복 규제되거나 그간 시행상 어려움이 있었던 조문은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이행의 효율성을 중대하는 한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시하는 표준모델에 따라 작성토록 하게 함.

8) 안전점검원 증감산정기준(제7장 제2절)

배관안전점검원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산정항목은 배관망전산화, 원격차단밸브설치 유무, 노후배관 교체설적 등 10개 항목으로 하고 산출방법 및 계산식을 명시하여 사업자 스스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함

9) 안전관리투자 권고(제7장 제3절)

동 기준은 안전관리투자를 권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을 명료화하고 권고대상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를 권고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게 함.

10) 기타

① 「특정설비제조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관한 기준」 폐지

② 법 제30조의 7 삭제로 「전기부식·방식관련시설공사계획서 및 조사·측정보고서 작성기준」 폐지

③ 법 제27조의 2 삭제로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심사 등에 관한 기준」 폐지

* 설비 *